

##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 안내

1. 규정명 :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조직개편 반영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 검사본부, 준법지원부로 명칭 변경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 (현행과 동일)
5. 시행일자 : 2022년 7월 1일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.  
다만,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 
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  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 
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 
관련 법규에 따른다.

※ 첨부 :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대비표

(첨 부)

##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
<p>제 1 조 ~ 제 25 조 (생략)</p> <p>제 26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) ① ~ ② (생략)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,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, 임점조사(필요시 <u>검사색션</u>에 의뢰가능) 등을 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 27 조 ~ 제 33 조 (생략)</p> <p>제 34 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 ~ ⑤ (생략) ⑥ 제 3 항 및 제 4 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서 보관하고, 이를 <u>검사색션</u>, <u>준법지원색션</u>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5 조 ~ 제 37 조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정&gt;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1&gt; ~&lt;2&gt;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 <u>(신설)</u></p>	<p>제 1 조 ~ 제 25 조 (좌동)</p> <p>제 26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) ① ~ ② (좌동)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,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, 임점조사(필요시 <u>검사본부</u>에 의뢰가능) 등을 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<u>&lt;개정 2022.07.01&gt;</u></p> <p>④ ~ ⑥ (좌동)</p> <p>제 27 조 ~ 제 33 조 (좌동)</p> <p>제 34 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 ~ ⑤ (좌동) ⑥ 제 3 항 및 제 4 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서 보관하고, 이를 <u>검사본부</u>, <u>준법지원부</u>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. <u>&lt;개정 2022.07.01&gt;</u></p> <p>제 35 조 ~ 제 37 조 (좌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정&gt; (좌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1&gt; ~&lt;2&gt; (좌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&lt;3&gt;</u>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